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도로교통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외이동로봇 운용자가 차, 노면전차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지 않는 안전한 방법으로 실외이동로봇을 운용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9357호, 2023. 4. 18. 공포, 2023. 10. 19. 시행)됨에 따라, 실외이동로봇 운용자가 실외이동로봇을 차, 노면전차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방법으로 운용한 경우 운용자에게 부과하는 범칙금을 3만원으로 정하고, 수시 적성검사 관련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내용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등과 합의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7. 10. ~ 8. 21.) 예정

대통령령 제 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4항 중 “법 제76조제5항”을 “법 제7조의2에 따른 고령운전자 표지 제작 및 배부와 법 제76조제5항”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의 보유내용란 중 “징집이”를 “징집 또는 소집이”로 한다.

별표 9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실외이동로봇 운용자가 차, 노면전차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방법으로 운용	제8조의2제2항	
---	----------	--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6조(위임 및 위탁) ① ~ ③ (생 략) ④ 시·도경찰청장은 법 제147조 제3항에 따라 <u>법 제76조제5항</u> 및 제109조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공단에 위탁한다.	제86조(위임 및 위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u>법 제7조의2에</u> <u>따른 고령운전자 표지 제작 및</u> <u>배부와 법 제76조제5항</u> ----- -----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통기획과	
연 락 처	(02) 3150 - 0659